

성체 분배 (공소 등)



공소 신자들의 경우 주일에 미사를 드릴 수 없을 때 합당한 예절(공소예절)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소 예절 중 공소에 모셔진 성체를 신자들이 영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평일에도 미사를 드릴 수 없을 경우 예절을 통해 소성당이나 공소에 모셔진 성체를 영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자들의 경우 평일에도 미사를 드릴 수 없을 때 공소 예절을 하며 감실에 모셔진 성체를 영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허용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또 성체가 모셔져 있는 경당에서 다른 경당으로 성체를 모셔 갈 때 마땅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야 성체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을까요?

◎ 답: 로마 경신성성의 공한 900/73 의 1 장 17 항에 나오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체를 분배하는 것은 특히 사제와 부제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 직무 시간의 일부 시간을 신자들의 필요에 따라 이 일에 배정함이 마땅하다. 그 밖의 합법적으로 시종직을 받은 사람도 비 통상적 성체 분배자가 된다. 특히 사제나 부제가 없거나 이들의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연로하거나 다른 직무 수행 때문에 성체 분배의 틈이 없거나 영성체할 신자 수가 너무 많아서 미사나 다른 예식 거행이 너무 오래 걸려야 할 경우에 시종들은 성체를 나누어줄 수 있다. 교구장은 사제나 부제나 시종이 없을 때 신자들의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체 분배의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1973.1.29 일자 Immense caritatis 1, I 과 II)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무나 성체를 분배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감실을 열어 성체를 영할 수 없습니다. 비록 수도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감실을 열 수 없고 더구나 스스로 영성체할 수는 없습니다. 본당이나 경당의 감실 열쇠는 본당신부나 담당 신부님 책임 하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만일 수녀님들이 영성체를 시켜 주거나 스스로 영성체하는 것을 보셨다면 틀림없이 주교님으로부터 특별 교육을 받은 후 특별히 허가를 받은 경우일 것입니다. 위의 성사성성의 훈령에서 예외적인 성체 분배권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1) 교구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 성체 분배자를 임명하며 일정 기간이나 항구적으로 자신과 다른 신자들에게 성체를 분배하도록 할 수 있다. a) 사제, 부제, 시종 등이 없는 경우 b) 사제들이 있어도 다른 사목 활동이나 허약한 체질, 고령 때문에 성체를 분배하지 못하는 경우. c) 영성체자들이 너무 많은 경우. 2) 교구장들은 사제들에게 예외적 성체 분배권을 수여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3) 교구장들은 그 권한을 보좌주교, 주교 대리, 특정 대리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예외적 성체 분배권을 받을 수 있는 평신도의 순위는 독서직을 받은 자, 대신학생, 수사, 수녀, 교리교사, 남 교우, 여교우의 순이다. 5) 남녀 수도 단체에서는 최고 장상이 예외적 성체 분배권을 받을 수 있다. 6) 성체 분배권 수여는 예식서에 따라 거행한다. 성체를 모셔 가기 위해서는 성합이나 달을 수 있는 다른 그릇에 모셔 가야 한다. 의복과 방법은 장소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